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53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배준영 · 추경호 · 김석기
김위상 · 서명옥 · 서지영
김성원 · 이상휘 · 조은희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 ----- ----- ----- <u>2029년 12월 31일</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4. <u>2029년 12월 31일</u> ----- ----- -----

1. ·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 ⑤ (생략)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 ----- -----2029 년 12월 31일-----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9년 12월 31일----- ----- -----
---	---

[illegible]